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미경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 1137

발의년월일 : 2016년 4월 19일

발 의 자 : 김미경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경자(양천), 박양숙, 김혜련,

장우윤, 김용석(도봉), 조상호, 오봉수, 이윤희, 권미경, 김희걸,

박준희, 서윤기, 박기열, 신원철,

김문수 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가. 노인과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주택단지 내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함.

나. 현행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조례로써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별도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에서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포괄적 정의만을 규정하고 있어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.

2. 주요내용

공동이용시설의 정의에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함(안 제2조제12호라목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노

인복지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

나. 예산조치 :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2조(정의) (생략)	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
1 ~ 11. (생략)		1 ∼ 11. (현행과 같음)
12. (생략)		12. (현행과 같음)
가. ~ 다. (생략)	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〈신	설〉	라.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
		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
		<u>복지시설 및 「장애인복지</u>
		법」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비용발생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공동이용시설로써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, 별도의 비용발생 요인은 없음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김 미 경